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94
------	-----

2023.3.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이상욱 의원 외 45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3.3.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상욱 의원)

1. 제안이유

- 재난 및 감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서울시 청년 고용정책의 지속적·안정적 제공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청년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청년 고용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호~제8호의 신설)
- 나. 조문 신설에 따른 현행 조문의 이동(제8조~제13조)
- 다. 제7조의 신설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인용함(안 제12조제1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재난, 감염병 등의 발생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시 청년실업률 현황 및 일자리지원 정책 현황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채용규모가 위축되고, 수시·경력직 채용이 축소되면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청년실업률¹⁾은 올해 1월 기준 5.9%로 전체

1) 청년실업률 :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하며 국제 기준으로는 15~24세의 실업률을 가리킨다.

실업률²⁾(3.6%)의 1.6배를 넘고 있으며, 청년확장실업률³⁾도 10.4%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년 도	성 별	연 령	청년 실업률 (%)		
			평균	남자	여자
2023.1월 기준		15~29세	5.9	5.9	5.9
2022.12월 기준			5.2	5.9	4.6

※ 자료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서울시 청년실업률은 6.8%로 울산광역시(7.8%), 강원도(7.5%)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상황임.

< 17개 광역시·도 청년 실업률 현황 >

구 분	2020	2021	2022
계	9.0	7.8	6.4
서울특별시	9.1	9.0	6.8
부산광역시	10.6	7.7	6.8
대구광역시	9.0	7.1	6.9
인천광역시	8.6	7.9	6.7
광주광역시	8.8	7.7	6.5
대전광역시	7.7	6.9	4.4
울산광역시	11.6	8.0	7.8
세종특별자치시	7.7	3.9	3.1
경기도	8.6	7.6	6.1
강원도	8.6	8.1	7.5
충청북도	8.1	6.0	5.5
충청남도	8.5	4.9	5.1
전라북도	9.1	5.9	6.6
전라남도	7.0	6.9	6.3
경상북도	10.5	8.0	7.4
경상남도	10.1	8.5	6.9
제주도	6.8	7.8	5.1

※ 자료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2023년 1월 고용동향(요약) 전체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대비 0.1% 하락. 청년층(15세~29세) 실업률은 5.9%로 전년동월대비 0.1% 하락(통계청 보도자료 2023.2.15.)

3) **청년확장실업률** : 청년실업률보다 넓은 범위의 실업 인구를 포함하는 지표, 실업자,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부분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실업자)를 합산해 나타낸다.
 청년확장실업률(10.4%) : 중졸이하(-17.6%), 고졸(-10.3%) , 대졸이상(-3.7%)

- 이에 정부는 청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구직활동지원금, 교육 지원, 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청년일자리 지원 제도 >

연번	지원 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자격조건
1	목돈 마련 지원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금액의 최대 6%	만 19세 ~ 34세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2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만 18세 ~ 34세	3개월 근속할 경우 현금 지급
3	교육지원 내일배움카드	내일 배움카드로 훈련과정 수강 후(1인당 300-500만원 한도내 훈련비의 45-85% 지원)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 및 저소득 재직자 등
4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시 목돈 1,200만원 지원 (본인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지원)	만 15세 ~ 34세 (군필자 복무 기간만큼 연장)	취업 기업에 2년간 근속한 자
5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지원 (단기 50만원, 중장기 최대300만원)	만 15세 ~ 34세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의 학력 소유자

- 서울시 또한, 경기침체와 고용여건의 악화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일자리 지원계획에 따라 16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총 1,614억 2천 8백만원을 집행함.

< 2022년 서울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예산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합 계		176,295	161,428
1	청년취업 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일자리정책과	20,255	20,255
2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일자리정책과	4,000	3,123
3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일자리정책과	3,982	3,226
4	서울시 일자리 카페운영	일자리정책과	2,326	2,308
5	취업날개서비스 운영	일자리정책과	1,744	1,742
6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조성·운영	일자리정책과	400	293
7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정책과	84,722	73,193
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일자리정책과	4,010	3,779
9	청년 창업꿈터 운영	창업정책과	515	506
10	캠퍼스타운 혁신을 통해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캠퍼스타운활성화과	40,346	40,165
11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미래청년기획단	8,760	7,735
12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미래청년기획단	2,000	1,952
13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미래청년기획단	829	786
14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대외협력과(舊 도시농업과)	2,360	2,319
15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43	43
16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농업기술센터	3	3

-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청년층 고용한파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고용정책 불안정성 증가에 대응해 청년고용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청년취업의 지속적·안정적 지원에 관한 특별 조례안” 이 발의됨(이상욱의원 대표발의, 2022.10.17).
-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현행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와 유사·중복성이 있어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조례안을 ‘상정 보류’ 하고,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 입법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제안함(2022.12.).
- 이에 따라, 청년취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여 개정안을 발의함.

라.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항·제5항 신설)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제4항), 재난과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 ③ (생략) <u>< 신 설 ></u> <u>< 신 설 ></u>	제3조(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은) ④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 4제1항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이는 사회적·경제적 변동성이 큰 특수한 상황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기준을 명시하고, 일자리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코로나19 유행과 같이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거나 사회 안전망에 위협이 될만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청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정책적 효과가 있음.
- 다만, 청년에 대한 고용 우대는 다른 연령대의 구직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고, 이는 연령 등의 이유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⁴⁾등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4)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이하 “성평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마.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안 제7조, 안 제12조)

- 안 제7조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직장체험 기회 제공, ▶취업 교육 및 정보 제공,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제공,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 ▶취업 알선,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등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2조는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7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장체험 기회 제공 2. 취업 교육 및 정보 제공 3.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4.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5. 취업 알선 6.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 7. 청년의 참여 유도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 ----- ----- ----- -----.</p>

- 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에게 직장체험, 취업교육 등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입법 효과가 있음.
- 또한, 재난, 감염병 발생 등의 사회적·경제적 비상·위기 상황에서도 서울시 청년 고용 정책의 지속적·안정적인 제공으로 청년 고용 정책의 실효성과 예측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9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이상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영한, 박철성, 박환희, 성흠제, 송도호,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정인, 윤기섭, 이병윤, 이봉준, 이소라, 이종태, 이효원, 임만균,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5명)

1. 제안이유

-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 상황으로 청년 고용 정책에 불안정성이 매우 증가한 바, 청년 고용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호~제8호의 신설).
- 나. 조문 신설에 따른 현행 조문의 이동(제8조~제13조)
- 다. 제7조의 신설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인용함(안 제1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청년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람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장체험 기회 제공
 2. 취업 교육 및 정보 제공
 3.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4.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5. 취업 알선
 6.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
 7. 청년의 참여 유도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청년일자리 창출”을 “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책무) ① ~ ③ (생 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제3조(책무) ① ~ ③ (현행과 같 음)</p> <p style="margin-left: 20px;"><u>④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취 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u>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 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등의 상황이 발 생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지원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5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생 략)</p> <p style="margin-left: 20px;">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p> <p style="margin-left: 40px;">1. ~ 3. (생 략)</p> <p style="margin-left: 40px;">4. 청년 구직자를 위한 <u>직업능 력개발 훈련</u>에 관한 사항</p> <p style="margin-left: 20px;">5. ~ 7. (생 략)</p>	<p>제5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② ----- ----- --.</p> <p style="margin-left: 40px;">1. ~ 3.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40px;">4. ----- <u>직업능력 개발훈련</u>-----</p> <p style="margin-left: 20px;">5. ~ 7. (현행과 같음)</p>

③·④ (생략)

제6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 일
자리 사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시의원, 전문성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 당사
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
다.

⑤ ~ ⑨ (생략)

<신 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청년일자
리 -----

④ -----

----- 사람 중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시
장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장체험 기회 제공
2. 취업 교육 및 정보 제공
3.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제공
4.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5. 취업 알선

제7조 ~ 제10조 (생략)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12조 (생략)

6.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

7. 청년의 참여 유도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 제11조 (현행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제7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지원 -----

-----.

② -----

----- 각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